

총학생회칙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5조【구성】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p> <p>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p> <p>2. 집행기구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자치기구의 집행기관</p> <p>3. 자치기구 : 학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생활관자치회, 무은재 새내기학생회</p> <p>4. 전문기구 : 생각나눔, 학생교육위원회, 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p> <p>5. 언론기구 : 교지편집위원회, 방송국</p> <p>6. 협의기구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p> <p>7. 특별기구</p>	<p>제5조【구성】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p> <p>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p> <p>2. 집행기구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자치기구의 집행기관</p> <p>3. 자치기구 : 학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생활관자치회, 무은재 학생회</p> <p>4. 전문기구 : 생각나눔, 학생교육위원회, 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p> <p>5. 언론기구 : 교지편집위원회, 방송국</p> <p>6. 협의기구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p> <p>7. 특별기구</p>	<p>무은재 학부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p>
<p>제43조【대의원】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p> <p>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p> <p>2. 각 학과학생회장</p> <p>3. 동아리연합회장단</p> <p>4. 생활관자치회장단</p> <p>5. 총여학생회장단</p> <p>6. 무은재 새내기학생회장단</p> <p>7. 열린 대의원</p> <p>③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각 소속 자치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 단, 대의원이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p>	<p>제43조【대의원】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p> <p>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p> <p>2. 각 학과학생회장</p> <p>3. 동아리연합회장단</p> <p>4. 총여학생회장단</p> <p>5. 생활관자치회장단</p> <p>6. 무은재 학생회장단</p> <p>7. 열린 대의원</p> <p>③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각 소속 자치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 단, 대의원이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p>	<p>① 무은재 학부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p> <p>현행 회칙상 순서에 맞게 대의원 순서 변경</p> <p>③ 무은재 학생회장단에 해당하는 호 추가</p>

<p>라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우, 대의원으로 인정한다.</p> <p>제58조【독립 재정에 관한 사항】제56조에도 불구하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자치기구의 독립재정 집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정 권고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수정 권고안이 의결된 경우 자치기구는 수정 권고안의 채택 여부를 반드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p>	<p>에 따라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우, 대의원으로 인정한다.</p> <p>제58조【독립 재정에 관한 사항】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자치기구의 독립 재정 집행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수정 권고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수정 권고안이 의결된 경우 자치기구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산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정 권고안의 채택 여부를 반드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p> <p>③ 수정 권고안이 기간 내 채택되지 않거나, 의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치기구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해서는 제60조를 준용한다.</p>	<p>구문 제58조의 내용을 원칙, 운영 방안, 징계 방안으로 분리</p>
<p>제66조【중앙운영위원】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중앙집행위원 중 3인 3. 학과학생회장 중 2인 4. 동아리연합회장 5. 총여학생회장 6. 생활관자치회장 7. 무은재 새내기학생회장 8. 각 전문기구장 <p>② 중앙운영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이 경우 해당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p> <p>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의 시작과 함께 대표 3인을 중앙운영위원으로 지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된 중앙운영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p> <p>④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의 시작과 함께 대표 2인을 중앙운영위원으로 지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된 중앙운영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p> <p>⑤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중앙운영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해당 기구는 지체 없이 새로운 대표를 중앙운</p>	<p>제66조【중앙운영위원】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학생회장단 2. 중앙집행위원 중 3인 3.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중 2인 4. 학과학생회장 이외 각 자치기구장 5. 각 전문기구장 <p>② 제1항제1호, 제2호를 제외한 중앙운영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른 그에 준하는 자가 중앙운영위원이 되며, 이 또한 궐위인 경우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p> <p>③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중앙운영위원은 총학생회장단 임기의 시작과 함께 각 기구에서 지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변경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이는 제13조의 단서에 따라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p> <p>④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재적 중앙운영위원의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을 상시 공개하여 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p> <p>⑤ 총학생회장단 이외의 중앙운영위원은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조퇴하게 될</p>	<p>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을 총학생회장단으로 변경, 학과학생회장을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로 변경, 학과학생회장을 제외한 자치기구 장을 하나의 조에 통합</p> <p>② 제5항 신설에 따라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 파견 조항 삭제</p> <p>③ 구문 제66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하나의 호에 통합하여 내용 명료화</p> <p>④ 내용 흐름에 따라 항 순서 변경</p> <p>⑤ 회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부대표 파견 허용</p>

<p>영위원으로 지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재적 중앙운영위원의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을 상시 공개하여 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p>	<p>때에는 부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부대표는 각 기구의 자치규칙 및 내규에서 정하는 부대표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p> <p>⑥ 부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제13조의 단서에 따라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p> <p>⑦ 중앙운영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제43조제8항을 준용한다.</p>	<p>⑥ 부대표의 정당성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하여 해당 회의에서 부대표를 인준</p> <p>⑦ 부대표 파견 시 의결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겸직 금지</p>
<p>제67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①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중앙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④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상호 동등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외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p> <p>⑤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을 자신이 소속된 기구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7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①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중앙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④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상호 동등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외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p> <p>⑤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을 자신이 소속된 기구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상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제13조의 단서에 따라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운영위원회의 공개 경고문 게재 2. 당 학기의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인원에서 제외 	<p>⑥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분</p>
<p>제69조【회의】①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장의 소집요구 2.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 	<p>제69조【회의】①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사 일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 긴급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장의 소집요구 	<p>① 일정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회의 정의, 학사 일정 고려에 대한 내용 명시</p> <p>② 긴급안건 처리 및 일정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운</p>

<p>3.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p> <p>4.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p> <p>③ 제2항제1호를 제외한 소집요구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p>	<p>2.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p> <p>3.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p> <p>4.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p> <p>③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한 소집요구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p>	<p>영위원회 긴급회의 정의, 연서에 의한 소집을 긴급회의 소집 요건으로 이동</p> <p>③ 정기회의, 의장이소집하는 긴급회의를 제외한 소집의 경우 서식을 작성</p>
<p>제70조【개회의결요건】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중앙운영위원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세칙, 규칙에 별도의 의결요건이 규정된 안건은 규정된 의결요건을 따른다.</p>	<p>제70조【개회의결요건】①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p> <p>② 중앙운영위원회 긴급회의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p> <p>③ 제66조제5항에 따른 부대표의 파견이 소집 공고에 명시된 경우 개최시 출석 인원으로 인정한다.</p> <p>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출석 중앙운영위원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세칙, 규칙에 별도의 의결요건이 규정된 안건은 규정된 의결요건을 따른다.</p>	<p>① 구문 제70조 분리, 정기회의 명시</p> <p>② 긴급회의 개최요건 완화</p> <p>③ 부대표 파견 허용에 따라 개최요건에 대한 항목 신설, 소집 공고에 명시된 경우 출석 인원으로 인정</p> <p>④ 구문 제70조 분리</p>
<p>제76조【재정에 관한 사항】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재정에 대한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심의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제출한다.</p> <p>② 중앙집행위원회, 학과학생회를 제외한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 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p>	<p>제76조【재정에 관한 사항】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재정에 대한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심의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제출한다.</p> <p>② 중앙집행위원회,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앙 재정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 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p>	

<p>1. 전체학생대의원회의 1학기 개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4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다음 회계연도 1분기의 예산안</p> <p>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1학기 종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1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회계연도 2분기의 예산안</p> <p>3. 전체학생대의원회의 2학기 개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2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회계연도 3분기의 예산안</p> <p>4. 전체학생대의원회의 2학기 종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3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회계연도 4분기의 예산안</p> <p>③ 학과학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개회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사전 심의한 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한다. 이때 학과학생회가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학과학생회 산하 의결기관에서 아직 승인받지 못하여 예산안 작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결기관에 상정될 최종안을 제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p> <p>1. 전체학생대의원회의 1학기 개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3분기·4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다음 회계연도 1분기·2분기의 예산안</p> <p>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2학기 개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1분기·2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회계연도 3분기·4분기의 예산안</p> <p>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특정 기구에 대해 본회 재정 배분의 보류를 의결한 경우, 해당 기구가 제출한 수정안을 심의·승인한다.</p> <p>⑤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64조에 의하여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하며, 이는 추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사후 인준되어야 한다.</p> <p>⑥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제6항에 따라 신속한 특별기구의 활동을 위해 특별기구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사후 인준되어야 한다.</p>	<p>1. 전체학생대의원회의 1학기 개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4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다음 회계연도 1분기의 예산안</p> <p>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1학기 종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1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회계연도 2분기의 예산안</p> <p>3. 전체학생대의원회의 2학기 개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2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회계연도 3분기의 예산안</p> <p>4. 전체학생대의원회의 2학기 종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3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회계연도 4분기의 예산안</p> <p>③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독립 재정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독립 재정의 분기가 끝나기 일주일 전 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수정이 필요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단체의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에 대한 수정 권고안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p> <p>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특정 기구에 대해 본회 재정 배분의 보류를 의결한 경우, 해당 기구가 제출한 수정안을 심의·승인한다.</p> <p>⑤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64조에 의하여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하며, 이는 추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사후 인준되어야 한다.</p> <p>⑥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제6항에 따라 신속한 특별기구의 활동을 위해 특별기구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사후 인준되어야 한다.</p>	
<p>제80조【비상대책위원회】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p>	<p>제80조【비상대책위원회】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p>	<p>① 구문 2항의 내용을 포함</p>

<p>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 24시간 후 구성된다.</p> <p>1. 총학생회장단 2인 모두가 사퇴 또는 궐위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을 경우</p> <p>2.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을 경우</p> <p>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총학생회장단이 궐위인 경우 구성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비상대책위원이 된다.</p> <p>1. 학과학생회장 중 2인</p> <p>2. 동아리연합회장</p> <p>3. 총여학생회장</p> <p>4. 생활관자치회장</p> <p>5. 무은재 새내기학생회장</p> <p>6. 각 전문기구장</p> <p>④ 제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시중앙집행위원 중 3인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각 전문기구장을 포함하지 않은 채 개최하고 즉시 각 전문기구장 인준을 심의의결한다. 인준이 의결된 경우 전문기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며, 동시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정된다.</p>	<p>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 24시간 후 구성된다.</p> <p>1. 총학생회장단 2인 모두가 사퇴 또는 궐위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을 경우</p> <p>2.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을 경우</p> <p>3.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총학생회장단이 궐위인 경우</p> <p>②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비상대책위원이 된다.</p> <p>1.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중 2인</p> <p>2. 학과학생회장 이외 각 자치기구장</p> <p>3. 각 전문기구장</p> <p>③ 각 비상대책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른 그에 준하는 자가 비상대책위원이 되며, 이 또한 궐위인 경우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한다.</p> <p>④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원 중 최대 3인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구성된 경우, 각 전문기구장은 첫 회의 개최 직후 인준을 받아 직무를 시작한다.</p> <p>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인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는동안 총학생회장단 선거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선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p> <p>⑦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15조, 제69조, 제70조를 준용한다.</p>	<p>하여 구성 조건을 하나의 항에 통합</p> <p>② 학과학생회장을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로 변경, 학과학생회장을 제외한 자치기구장을 하나의 조에 통합</p> <p>③ 각 기구의 대표에 준하는 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정</p> <p>④ 구성 조건과 관계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3인에서 최대 3인으로 변경</p> <p>⑤ 구문 제5항 표현 명료화</p> <p>⑥ 선거가 무산되어 구성된 경우, 총학생회장단 선거 지원을 중요시하도록 명시</p> <p>⑦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준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시 의장에 대하여 의결기구 총칙 준용</p>
<p>제81조【권한·업무】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운영위원회 대신 기능한다.</p> <p>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p>	<p>제81조【권한·업무】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p> <p>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p>	<p>① 표현 중복 제거</p> <p>② 모든 상시적 업무를 담당</p>

<p>단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p> <p>③ 제80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일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p> <p>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중앙집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앙집행위원회는 해산하며, 임시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p>	<p>단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p> <p>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집행부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해산한다.</p> <p>④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p>	<p>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p> <p>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기구 명칭을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로 변경, 표현 명료화</p> <p>④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가 별도의 예산이 아닌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을 사용</p>
<p>제82조【위원장】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출 이전까지의 회의 소집에 관하여서는 중앙운영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개최하며, 개회 직후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의장직을 수행한다.</p> <p>② 제80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제80조제6항의 전문기구장 인준이 완료된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p> <p>③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p>	<p>제82조【위원장】① 총학생회칙에서 가장 앞서 규정된 기구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이 첫 회의를 소집하고 임시로 의장직을 수행한다. 단, 제2항제1호에 규정된 2인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지정한다.</p> <p>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첫 회의를 소집한 자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p> <p>④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권한을 각 비상대책위원이 나누어 맡을 수 있다.</p>	<p>① 개인의 요소가 아닌 회칙상 규정된 기구 순서를 기준으로 임시 의장을 정하며,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경우 내부 협의</p> <p>② 비상대책위원장 호선에 대한 내용을 분리</p> <p>③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선되지 않는 경우 임시 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p> <p>④ 모든 권한을 대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 권한을 비상대책위원들이 나누어 맡는 것을 허용</p>
<p>제108조【목적】총여학생회는 본회 여학생들의 자치기구로, 본회 여학생들의 소통 차창구가 되고 이공계 사회에서 양성이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08조【목적】총여학생회는 본회 여학생들의 자치기구로, 본회 여학생들의 소통 차창구가 되고 이공계 사회에서 성평등에 기반한 제반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목적의 주안점을 양성 조화에서 성평등으로 변경</p>

제4장 자치기구 제6절 무은재 새내기학생회	제4장 자치기구 제6절 무은재 학생회	무은재 학부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
제113조【목적】무은재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회원 중 본교 무은재 새내기학부생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민주적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13조【목적】무은재 학생회는 본회 회원 중 본교 무은재 학부생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민주적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무은재 학부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
제114조【회원】무은재 새내기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본교 무은재 새내기학부생 전원으로 한다.	제114조【회원】무은재 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본교 무은재 학부생 전원으로 한다.	무은재 학부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
제141조【제반사항】② 특별기구의 대표로서 해당 특별기구의 집행을 총괄하고 의결기구에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위원장을 둔다.	제141조【제반사항】② 특별기구의 대표로서 해당 특별기구의 집행을 총괄하고 의결기구에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위원장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없는 특별기구 설립 허용
제159조【원칙】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59조【원칙】①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중앙 재정과 독립 재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본회 재정은 중앙 재정을 칭한다.	구문 제159조를 운용 원칙과 구분 원칙으로 분리
제160조【재원】본회 재정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 본교 교비지원금, 독립 재정,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60조【재원】중앙 재정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 본교 교비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독립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중앙 재정과 독립 재정의 재원을 명시
제162조【회계연도】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4분기 :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162조【회계연도】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4분기 :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립 재정의 회계연도는 해당 자치 기구의 자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학생회의 독립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할 수 있다.	③ 독립재정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 ④ 학과학생회 회계연도 및 분기의 기준 명시

	<p>1. 1학기 : 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개강 직전일까지</p> <p>2. 2학기 :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다음해 봄학기 개강 직전일까지</p>	
<p>제163조【예산안】① 예산안은 매 분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각 기구에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이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각 기구의 예산안을 보고하는 자는 해당 기구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어야 한다.</p> <p>② 예산안의 편성 및 확정은 매 분기 시작일 7일 이내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p> <p>③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서 본회 재원 중 본교 교비지원금, 기타 수익금과 같이 재원의 총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결산보고서·예산안 등을 참고한 뒤 해당 사실을 명시하고 예산안을 다소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사업별 총액은 최대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본회 전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1개월 이내의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제57조제2항에 의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특정 기구에 일정 기간 재정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을 보류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⑥ 여러 분기에 걸쳐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 결산시기를 명확히 보고 하여야 한다.</p> <p>⑦ 세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의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세부 예산안을 확정 후 집행한다.</p>	<p>제163조【예산안】① 예산안은 매 분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각 기구에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이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각 기구의 예산안을 보고하는 자는 해당 기구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어야 한다.</p> <p>② 예산안의 편성 및 확정은 매 분기 시작일 7일 이내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p> <p>③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서 본회 재원 중 본교 교비지원금, 기타 수익금과 같이 재원의 총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결산보고서·예산안 등을 참고한 뒤 해당 사실을 명시하고 예산안을 다소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사업별 총액은 최대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본회 전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1개월 이내의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제57조제2항에 의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특정 기구에 일정 기간 재정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을 보류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⑥ 여러 분기에 걸쳐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 결산시기를 명확히 보고 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에서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독립 재정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 명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p>	<p>⑦ 세부예산안에 대한 절차 삭제, 독립 재정의 행정적 자율성 허용</p>
<p>제166조【결산】① 결산보고서는 매 분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각 기구에서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p>	<p>제166조【결산】① 결산보고서는 매 분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각 기구에서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p>	<p>⑥ 독립 재정의 행정적 자율성 허용</p>

<p>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된다.</p> <p>② 제163조제3항의 경우와 같이 예산안이 다소 유동적으로 편성된 경우라 할지라도 결산보고서는 재원의 각 출처를 명시하여 재정의 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인준한 결산보고서를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제163조제6항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기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결산이 완료된 분기에 결산 심의를 한다.</p>	<p>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된다.</p> <p>② 제163조제3항의 경우와 같이 예산안이 다소 유동적으로 편성된 경우라 할지라도 결산보고서는 재원의 각 출처를 명시하여 재정의 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인준한 결산보고서를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제163조제6항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기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결산이 완료된 분기에 결산 심의를 한다.</p> <p>⑥ 제1항에서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독립 재정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 명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p>	
---	--	--